

이사회규정

소관부서 : 총무팀
제정 : 1962. 6. 1.
개정 : 1982. 9. 1.
1985. 5. 10.
1993. 2. 15.
2012. 3. 6.
2014. 5. 30.
2024. 1. 23.
2025. 5. 13.
2026. 3. 24.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 (권한)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
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.

③ 이사회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30조의4에 따른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이행을 감독한다.(新設 2025.05.13.)

제2장 구성

제4조 (구성)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서 구성한다.

제5조 (의장) ① 이사회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(改定 2026.03.24.)

② 이사회 의장 유고시에는 사외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그 순서는 선임자 순으로 하며, 그 일자가 동일한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한다.(改定 2026.03.24.)

제3장 회의

제6조 (종류)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
② 정기 이사회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의장은 그 개최를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다.

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를 소집 개최할 수 있다.

제7조 (소집권자)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이사회 의장 유고시에는 제5조 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(改定 2026.03.24.)

② 각 이사는 이사회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이사회 의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(改定 2026.03.24.)

제8조 (소집절차)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1주일 전에 각 이사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 소집한다.

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8조의 2 (관계인의 출석)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 아닌 자도 출석케 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9조 (결의방법)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 다만, 상법 제397조의2(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) 및 제398조(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

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용 동시 송·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10조 (부의 사항)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
가. 주주총회의 소집

나.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

다. 정관의 변경

라. 자본의 감소

마.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·이전, 해산, 합병, 분할·분할합병, 회사의 계속 등

바.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

사.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,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, 변경 및 해약

아.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·해임 및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

자.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

- 차. 현금, 주식, 현물배당 결정
 - 카.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 - 타.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범위 내 이사 보수의 결정
 - 파.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및 변경
 - 하.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
 - 거.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안건
2.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
- 가.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
 - 나. 사업계획 및 중요 신규사업
 - 다. 위험관리책임자, 준법감시인 및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
 - 라. 본점, 지점 및 해외현지법인의 설치, 이전 및 폐지
 - 마. 명의개서대리인 지정 및 변경
 - 바.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
 - 사. 내부통제제도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 - 아. 내부통제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(新設 2025.05.13.)
 - 자. 책무구조도의 마련 및 변경에 관한 사항(新設 2026.03.24.)
3. 재무에 관한 사항
- 가. 건별 100억원 이상에 대한 자회사 및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
 - 나. 건별 자기자본의 10% 이상의 타법인 출자 및 출자지분의 처분
 - 다. 건별 자기자본의 10% 이상의 시설투자
 - 라. 건별 자기자본의 10%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 및 처분
 - 마.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
 - 바. 자기주식 신탁계약 등의 체결 또는 해지
 - 사. 신주의 발행시 실권주 및 단주수의 처리
 - 아. 사채의 모집 및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
 - 자. 해외주식예탁증서(DR) 발행 및 해외증권(DR, 주식) 상장
 - 차. 준비금의 자본전입
 - 카. 자기주식의 소각
 - 타. 중간배당
 - 파. 신주의 발행
 - 하.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작성 및 승인(新設 2026.03.24.)
4.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
- 가. 이사회 의장 및 대표이사의 선임(改定 2026.03.24.)
 - 나.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
 - 다.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- 라. 이사회규정 및 이사회내 각 위원회 규정의 제·개정 및 폐지
 - 마. 이사의 경업, 겸직 및 회사와의 거래에 대한 승인
 - 바.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
5. 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
- 가. 회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선임
 - 나. 회사가 부담가능한 리스크수준의 결정
 - 다.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한도 허용 승인

- 라. 리스크관리 규정의 제·개정 및 폐지
- 마.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
(改定.2025.05.13.)

6. 기타

- 가.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나.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- 다.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

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2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
3. 기타 이사회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4. 기타 법령, 규정 또는 예규에 의해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

제11조 (이사회 내 위원회)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
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2. 이사회 의장 및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(改定 2026.03.24.)
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
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
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
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⑥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. 단, 감사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2조 (위임사항)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.

② 이사회는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해 이사회산하에 리스크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고, 제10조 5항 가목을 제외한 리스크관리에 관한 사항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
제13조 (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)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,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제14조 (간사) 본회에 간사를 두고 간사는 총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. 간사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각 이사를 보좌하고 본회의 사무를 정리한다.

제15조 (의사록)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